

제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8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송철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250,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내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D은 피고 B과 친척관계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D 소유의 제주시 E 지상에 원고 명의로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 지하층에서 피고들과 ‘F’이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50%씩 출자하고, 각 50%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0. 11. 원고에게 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6,000,000원, 2014. 1. 20. 30,000,000원, 2014. 1. 24. 19,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2013. 10. 11.부터 2014. 1. 24.까지 원고에게 총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8. G과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공사를 완료하자 2014. 9. 15. 공사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마. F은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이 자신 명의 계좌로 F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바. F은 2014. 8. 19.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는 F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4. 9. 5.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H’로부터 관광객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선수금 192,000,000원을 반환해 주고, 2014. 9. 6.경부터 F에 관광객을 보냈다. F은 2015. 10.경 폐업하였다.

사. 원고는 2018. 9. 7.경 제주지방경찰청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 19.경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고 F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순 수익금 152,648,325원 중 50%인 76,324,16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19. 7. 24. 'F의 자금을 관리한 피고 B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측에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564,908,780원이고,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409,422,400원으로, 1,000,000원 이하 관광객 수수료 명목 이체 금액을 제외하면, 원고 측에 127,814,800원이 더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위 사건 담당 검사는 2019. 10. 16.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제안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들과 F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F 운영에 관하여 성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금의 50%를 배분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수익배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F도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선수금 초과 지급분 12,000,000원, 재고 물품 구입비 5,760,000원, 기타 물품 구입비 9,650,000원, 쇼핑물 임차료 및 관리비 28,000,000원, 고객 수수료 채권 81,033,900원 등의 합계 136,443,9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폐업 당시 자산과 수익금은 261,122,853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자산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136,443,900원을 반환함과 아울러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잔여재산 124,678,953원에서 원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62,339,476원(원 미만 버림)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198,783,376원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관계는 2015. 10.경 종료되었고, 그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대한 정산합의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료와 관리비는 동업관계 종료시 정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조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1) 법리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참조).

2)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2015. 10.경 해산되었고, 현재 조합의 잔무로서 특별히 처리할 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다른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할 수 있다.

3) 잔여재산 분배 완료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방법 및 정산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경 F을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 피고 B에게 2016. 2. 29. 17,000,000원, 2016. 3. 10. 25,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총 4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이나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다면 F을 폐업한 이후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F을 폐업한 2015. 10.경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8. 9. 7.경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대표이사 D은 피고 B와 친척관계에 있었는데도, D이 위 3년의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이 사건 조합재산의 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 D은 피고 B이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발생한 순수익금 152,648,325원 중 원고에게 분배해야 할 돈 76,324,162원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계약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J가 2015. 7. 12.부터 2015. 9. 25.까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버스 운행비 82,389,200원을 이 사건 조합 자금을 관리한 피고 B의 계좌에서 지급받았고, 원고와 계약한 가이드 K도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33,6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에서 지급받는 등 피고 B 계좌에서 원고, L(D의 아들), J, K에게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564,908,780원이고, 반대로 원고, L, J, K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의 합계가 409,422,400원인바, 원고 측이 피고 B으로부터 155,486,38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종철, 판사 최석준, 판사 강미혜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청구하는 금원의 합계를 346,250,303원(= 임대료 25,000,000원 + 관리비 3,000,000원 + 원고가 단독 지출한 물건값 15,410,500원 + 폐업 후 정산금 116,322,853원 + 쇼핑 수수료 81,033,900원 + 선수금 남은 돈 55,483,050원 + 보증금 환불금 중 1/2 50,000,000원 + 기타 부당이득금 44,8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가, 2021. 6.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1/2로 감축하였음에도 별도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다.